

# 충남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

< 2013.03.01. 제정 >

제1차 개정 2014.09.01.

제2차 개정 2014.12.01.

제3차 개정 2017.02.17.

**제1조(목적)**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(이하 “규정” 이라 한다)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전기공학과(이하 “학과”라고 한다)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·석사연계과정, 석사과정, 박사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. (개정 2017.2.17.)

**제3조(논문제출자격)**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, 학과에서 추가로 정한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.

① 적어도 1회 이상 국내·외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. (개정 2017.2.17.)

**제4조(논문제출자격시험)**

① 논문제출자격시험(이하 “자격시험”이라 한다) 과목은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학위과정 중 수강한 과목에서 선택한다. (개정 2017.2.17.)

②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면서 지난 학기에 이미 합격한 과목을 선택할 경우 해당 과목은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.

③ 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응시절차)** 학위청구논문(이하 “논문”이라 한다)의 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시험과목)**

① 자격시험은 전공에 대하여 실시한다.

② 자격시험의 교과목은 학과에서 정하되,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, 박사학위과정과 석·박사통합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.

**제7조(시험출제기준)** 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.

**제8조(출제위원 및 채점위원)**

① 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2인 이상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
②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

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**제9조(합격기준)**

- ① 전공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- ② 각 과목별로 60점 미만을 과락으로 하고, 과락된 과목은 다시 응시할 수 있다. (개정 2017.2.17.)

**제10조(보고)** 학과주임교수는 자격시험의 합격 결과를 계열학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(개정 2017.2.17.)

**제11조(논문지도위원회)** (신설 2014.12.1.)

- ①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.
- ② 수료학점의 1/2 이상을 취득한 박사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, 학과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③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.

**제12조(외국어능력 기준)** (신설 2014.9.1.)

-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.
  - 1. TEPS 500점 이상 (개정 2017.2.17.)
  - 2. TOEIC 600점 이상(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모의 TOEIC 성적 인정) (개정 2017.2.17.)
  - 3. TOEFL(CBT) 163점 이상
  - 4. TOEFL(iBT) 57점 이상
  - 5.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(유효한 강좌의 종류는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) (개정 2017.2.17.)
- ②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.

**제13조(논문 계획 및 예비 발표)** 충남대학교 대학원학사운영규정을 따른다.

**제14조(학술지게재 의무조건)** 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으로 환산하여 250% 이상을 충족하고,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(별지 제1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17.2.17.)

- ① 적어도 한 편의 학술지논문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한다.
- ②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하되, 저자 수를 계산할 때는 지도교수(공동 지도교수 포함)를 제외한다.
- ③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.

**제15조(예외)** 예외조항을 두지 않는다.

**제16조(시행세칙의 개정)**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13.03.01.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4.09.01.)

이 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 (단, 외국어능력 기준을 규정한 제12조는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)

부 칙(2014.12.01.)

이 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 (단, 논문지도위원회 기준을 규정한 제11조는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)

부 칙(2017. 2.17.)

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12조 개정 시행세칙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

학술지게재/논문발표 점수 환산 방법

구 분	내 용		편당 점수
가 중 치	단독 : 100% 2인 : 70% 3인 : 50% 4인이상 : 30%		
학 술 지	국내	전기학회, 전자공학회	100%
		학술진흥재단등재 또는 등재후보논문지	50%
	국외	JIEE, IEEE, IET, JEET	200%
학술대회	국내	최대 50%까지만 인정	10%
	국외	JIEE, IEEE, IET	100%
		기타(4개국이상 참가)	50%

[별지 제1호 서식]

## 학술지게재 점수 계산표

[전기공학과 박사학위 취득예정자의 논문발표 심의자료]

작성일 : 20 . . . 년 . . . 월 . . . 일

작성자 :

1. 취득예정자의 인적사항

성 명		박사과정기간	20 . . . ~ 20 . . . (6년 개월)		
청구논문제목					
지도 교수		전 공 분 야			
현 직 장 명					
부 서		직 위		전 화 번 호	

2. 발표논문의 실적요약

구 분	심 사 대 상 논 문		기 타 사 항	
	건	점 수	건	점 수
국 외 논 문			국 외 논 문	
국 내 논 문			국 내 논 문	
국외학술회의			국외학술회의	
국내학술회의			국내학술회의	
총 점 수			보고서, 특허, 잡지기사 등	

3. 논문발표실적

구 분		논 문 명	저널명/ 발표기관	년월	저자수 (순서)	점수	관련도
논문지 게재	국외						
	국내						
학술회의 게재	국외						
	국내						
기 타 사 항							

- 점수와 관련도는 지도교수가 확인하고 기타사항의 내용은 점수를 기재하지 않음.

4. 특허실적

구 분	특 허 명	등록(출원)번호	등록일	등록자	점수	관련도
국내						
국외						

붙임 ; 증빙자료 ○부